

번 호	제 호	
연 월 일	2020. . .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 연월일	2020. . .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신제품(NEP) 인증은 199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도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매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기존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망 신사업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 평가 및 평가기관에 관한 소송·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의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왔는바, 해당 개선방안을 실현하고 기존 법령의 해석의 명확성 및 체계성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제품 인증 신청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삭제

현행 신제품 인증 신청시 과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신청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제2조의5제3호에서 품질경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삭제함

나. 수수료 규정 신설

현행 제11조 제1항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별표 5에 따르면 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신제품 인증심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고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여 신제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되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초 신청시에는 면제하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자 동일 신청제품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를 “설명자료”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3호 중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를 “설명자료”로 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를 “설명자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에는 면제하되,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경우와 신제품 인증 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 불합격한 이후 동일 신청제품에 대해서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5에 신제품 인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3호 중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를 “(국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로 대체 가능)”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를 “257mm×364mm[보존용지 120g/m²]”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서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부터 적용한다.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인증	서류·면접 심사	20만원
	현장 심사	50만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면접 심사	20만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50만원	
신제품 인증	서류·면접 심사	20만원
	현장 심사	50만원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면접 심사	20만원
	현장 심사	50만원

신기술 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	-----	------	------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 명칭		신청분과 []위원회 ※ []에는 뒷면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신청분과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적용예정제품 명칭			
	기술핵심단어 [] [] [] [] ※ []에는 뒷면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술핵심단어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 귀하

제출서류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로 대체 가능)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수수료 서류·면접심사 : 200,000원 현장심사 : 500,000원
평가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평가기관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면접 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결과 통보
신청인		평가기관		전문분과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종합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인증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분과 및 기술핵심단어 분류표

번호	신청분과	세부 기술분야	기술핵심단어
1	전자제품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정보가전, 음성정보, 조명, 가전, 가정용가스기기, 냉난방,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TV, 방송수신, 3차원영상, AV재생, 화상통신, 카메라 캡코더, 전광판, 휴대용AV, 스피커, 마이크, 치료기기, 진단기기, 의료정보, 대기전력, 송강기, 인버터, PWM, 가전기기저능화, 생체진단, 인덕션히터, 음성통역기, 조명기기, 컨버터, 정류기, 충전기, 네트워킹, 기타
2	전자부품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전지, 디스플레이	전지재료, 제조 및 측정 평가장비, 전지응용, 일차전지, 이차전지, 초고용량커패시터, LCD, PDP, FED, EL, 디스플레이 소재, E-paper, 3D, Si소자, 화합물소자, MEMS, 센서, 반도체, SOC, 설계Tool, PCB, 커패시터, 자성재료, 기층매체, 초고주파, 플라즈마, 연료전지, 태양전지, 2차전지, 나노소자, 나노공정, 반도체공정 소재, 유전소자, 나노Photonics, 나노측정, 나노조작, IoT, 투명전극, 터치스크린, 레이저, 슈퍼커패시터, 공기전지, 렌즈, 기타
3	산업전자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감시,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계측, 광원, 광소자, 광응용, 열처리, 노광, 예칭, 폴리싱, 증착, 이온주입, 세정, 패키징, 측정/검사, 센서, 압력, 영상, 자동제어, 전력, 폴리머, LED응용, IoT, 전장, 유무선 신호처리, 반도체 장비부품, 기타
4	전기기기	충전기, 전력변환장치	발전기/전동기 제어, 전력변환기, 전력용재료, 변압기, 개폐기, 송배전, 보호감시, 자동화제어, 전기로, 전선, 초전도, 전기용접, 가열, 전원장치, 에너지저장, 압축기제어, 리액터, 방수방열, 송배전, 아크, 케이블, 태양광, 풍력,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유비쿼터스, 지능형 전력망, 인버터, 컨버터, ESS, 스마트그리드, 계통연계, 신재생에너지, 전력선통신모뎀, SMPS(초소형 전기기기의 전원장치), FACTS, 전력품질보상, 주파수제어, 기타
5	H/W	시스템 H/W	프로세서/DSP, 영상모듈, 통신모듈, 센서모듈, 스토리지모듈, 메모리 모듈, 입출력 장치 모듈, 서버 및 시스템, 기타
6	S/W	시스템 S/W, IT응용 S/W	OS, 스토리지,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가상화플랫폼, 슈퍼컴퓨팅, 임베디드S/W,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그래픽, 실감형UI/UX, 보안/저작권, 개발/생산성 S/W, 게임 S/W, 모바일앱/웹, 웹프로그래밍, 웨어러블 S/W, SNS/랭킹/추천, 시맨틱 웹, 온톨로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스트림 처리, 음성인식, 컴퓨터비전, 가상현실, 유비쿼터스 응용, HCI, 자연언어처리, IoT, 미들웨어, CAD/CAM, 시뮬레이션, 기타 응용S/W
7	통신	무선 통신, 유선 통신, 사물인터넷 통신	광대역 이동통신(B4G, 5G), WLAN/WPAN 기술, 양자통신, 음파 및 초음파통신, 분자/나노통신, 광액세스망, 대용량전달망, SDN, 네트워크가상화, 네트워크제어, M2M, D2D, IoT, NFC, RFID/USN, 사물인터넷서비스, 유무선 융합 액세스, 광통신, GPS, CDN, 기타
8	디지털콘텐츠	차세대 콘텐츠, 융합콘텐츠, 콘텐츠플랫폼	3D영상, 디지털홀로그래픽, 컴퓨터그래픽스, 영상특수효과 및 시뮬레이션, 콘텐츠상호작용(UI/UX), 가상/증강현실, 오감융합콘텐츠, 이러닝, 콘텐츠창작/유통, 콘텐츠저작권보호, 스토리텔링콘텐츠, 대용량콘텐츠검색, 디지털시네마, 디지털사이니지, 기타
9	수송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자동차, 조선/해양, 철도, 항공/우주, 엔진, 발전기, 연료,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연료전지차, 조명, 차량공조, 자기부상, 드론, 스마트카, 기타
10	자동화기계	로봇/자동화기계, 국방플랫폼	로봇, 자동화, 센서, 계측제어, 모터, 플랫폼, 액추에이터, 작동제어 기타
11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시스템, 재난안전장비	냉난방공조, 압축기, 열교환, 에너지, 진공, 축열, 터빈, 펌프, 송풍기, 열원기기, 전자제어, 밸브, 측정기기, 공업로연소, 연소기기, 보일러, 동력전달, 축, 유공압, 액추에이터, 감속기, 진동, 소음, 팬, 베어링, 프레스, 직조기, 기타
12	정밀기계	정밀생산기계,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측정표준	금형, 센서, 측정, 가공, 연삭, 절삭, 나노, 유공압, 열교환, 정밀제어부품, 기타
13	기계요소부품	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도금, 부식, 압연, 사출, 성형, 유공압, 코팅, 방식, 용접, 공구, 기타
14	금속재료	금속재료, 국방소재, 분석/물성평가기술	금속재료, 나노, 합금, 재료분석/평가기술, 복합재료, 고온재료, 고내식성 재료, 고강도 재료, 금속분말, 기타
15	세라믹재료	세라믹재료	세라믹재료, 태양전지, 복합재료, 기능성 세라믹, 나노세라믹스, 카본소재, 기타

※ 기술핵심단어는 신청기술의 가장 유사한 분야를 1개 단어씩 4개까지 선택합니다.

신기술 인증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분과 및 기술핵심단어 분류표

번호	신청분과	세부 기술분야	기술핵심단어
16	원자력	원자로 노심/계통, 원자력 안전, 핵연료/핵주기, 폐기물 관리, 원전 건설/운영, 핵융합	원자로 노심, 열유체, 연구용원자로, 중대사고, 안전규제, 방사선방호, 핵연료, 핵연료 주기, 방사성폐기물관리, 핵융합 노심, 플라스마, 초전도, 삼중수소
17	방사선	방사선 발생, 계측, 이용	가속기, 중성자, 레이저, 방사선치료/영상화, 보안검색, 비파괴검사, 방사선 계측 및 선량평가, 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표지화합물, 방사성의약품, 방사선육종, 생물반응활용, 친환경 및 에너지 소재
18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전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에너지, 파력	풍력시스템, 풍력계측장비, 타워/기초, 블레이드/구동제어기기, 발전기 및 전력변환/연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박막태양전지, CIGS/염료감응형/유기태양전지,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전력변환기기시스템, 태양전지 측정/제조 장비, EA(셀, 전지, 스택), 연료전지용소재, M-BOP, E-BOP (전자제어부),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가스화, 바이오매스 열분해, 바이오오일, 바이오가스, 수소생산, 수소저장, 태양열 온수기, 미활용에너지, 폐자원에너지, 광화학반응장치, 광화학반응 장치, 태양열건조 설비, 파력에너지, 기타
19	의약·생명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의료기기, 치료기기, 진단기기,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바이오공정/기기,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의료정보 및 시스템	임상화학/생물분석기기, 치료기기, 진단기기, 한방용 치료기기, 의료기기, 한방용 진단기기, 수술용 치료기기, 그 외 치료/진단기기, 의약품, 바이오안정장치, 바이오생체재료,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화학소재, 바이오화학제품/소재, 기능성식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바이오매스, 미생물 및 효소, 바이오분석기, 바이오공정기술, 천연물소재, 임플란트, 생체재료, 의료용소재, 의료정보시스템 및 설비, 한의정보시스템 및 설비, 재활용기기, 그 외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구, 의료정보 및 시스템
20	정밀화학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석유화학 제품, 화학/나노화학 공정기술	윤활유, 오일, 첨가제, 석유화학제품유도체, 염료, 안료, 계면활성제, 에너지용 화학제품, 가스제, 페인트, 도료, 코팅제, 잉크, 감광소재, 산업용화학제품, 촉매, 유기합성제품, 화장품, 접착제, 점착제, 실란트, 시약, 화공약품, 가스켓소재, 실리콘액, 고무소재, 기타 정밀화학제품
21	고분자·섬유	고분자/섬유, 염색가공, 고분자기반 복합소재, 고분자재료, 화학제품,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고분자화학 및 공정기술	자동차/IT용 고분자소재, 의료용 고분자소재, 환경산업용고분자, 에너지용고분자, 재활용고분자, 전자재료용고분자, 고무, 고분자재료, 직포, 부직포, 의류, 섬유, 나노섬유, 탄소섬유, 섬유용 합제품, 인조/천연피혁, 염색가공, 고분자복합재료, 나노소재, 광기능 고분자, 고분자 가공, 직물, 여과장치, 기타
22	대기, 폐기물	대기/폐기물	온실가스, 탈황, 탈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이옥신, VOC, 악취제거, 모노링, 오존, 스모그 살내오염, 폐기물자원화, 폐기물에너지화, 폐기물재활용, 소각, 열분해, 퇴비화, 가스화, 폐기물처리, 대기오염, 원자력폐기물, 혐기소화, 폐열이용, 폐기물 소각, 기타
23	수질, 토양	수질/토양	살균, 정수장, 고도처리, 관망, 하폐수, 오염토양, 오염지하수, 폐광지역, 유해화학물질 자연정화, 질소/인 제거, 축산폐수, 산업폐수, 수처리, 기타
24	건설구조/시설	건축구조/시설, 토목구조/시설, 환경시설, 에너지/플랜트 시설	건물, 교량, 터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댐, 보, 해양구조물, 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플랜트, 농업시설, 조경, 건축외장시설, 건축내장시설,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조력발전시설, 교통, 구조, 내진, 창호, 해양구조물, 수산구조물, 수력발전시설, 먼진장치, 제진장치, 진동제어장치, 철도궤도, 방음시설, 흡음시설, 기타
25	건설재료	건축재료, 토목재료, 환경재료	결합, 구조 배관, 보강, 부식, 분쇄, 완충, 철골, 철판, 코팅, 콘크리트, 플레이트, 시멘트, 복합재, 합성재, 재활용재, 아스팔트, 건설도로, 내화재료, 내진재료, 친환경재료, 조경재료, 골재, 슬러지, 보수, 혼합재료, 폐기물재료, 기타

※ 기술핵심단어는 신청기술의 가장 유사한 분야를 1개 단어씩 4개까지 선택합니다.

신제품 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신청제품	제 품 명		모 델 명		
	개 발 기 술 내 용 요약				
	매 출 액 (전 년 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 원	수 출 액 (전 년 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
	동 종 업 체		수 요 처		
	신 기 술 성 증 명 자 료				
	* 예 시 : NET, 산업재산권, 연구결과보고서 등				
국 제 표 준 화 지 원 필 요 성 (○, ×)					

업무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 귀하

제출서류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로 대체 가능)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평가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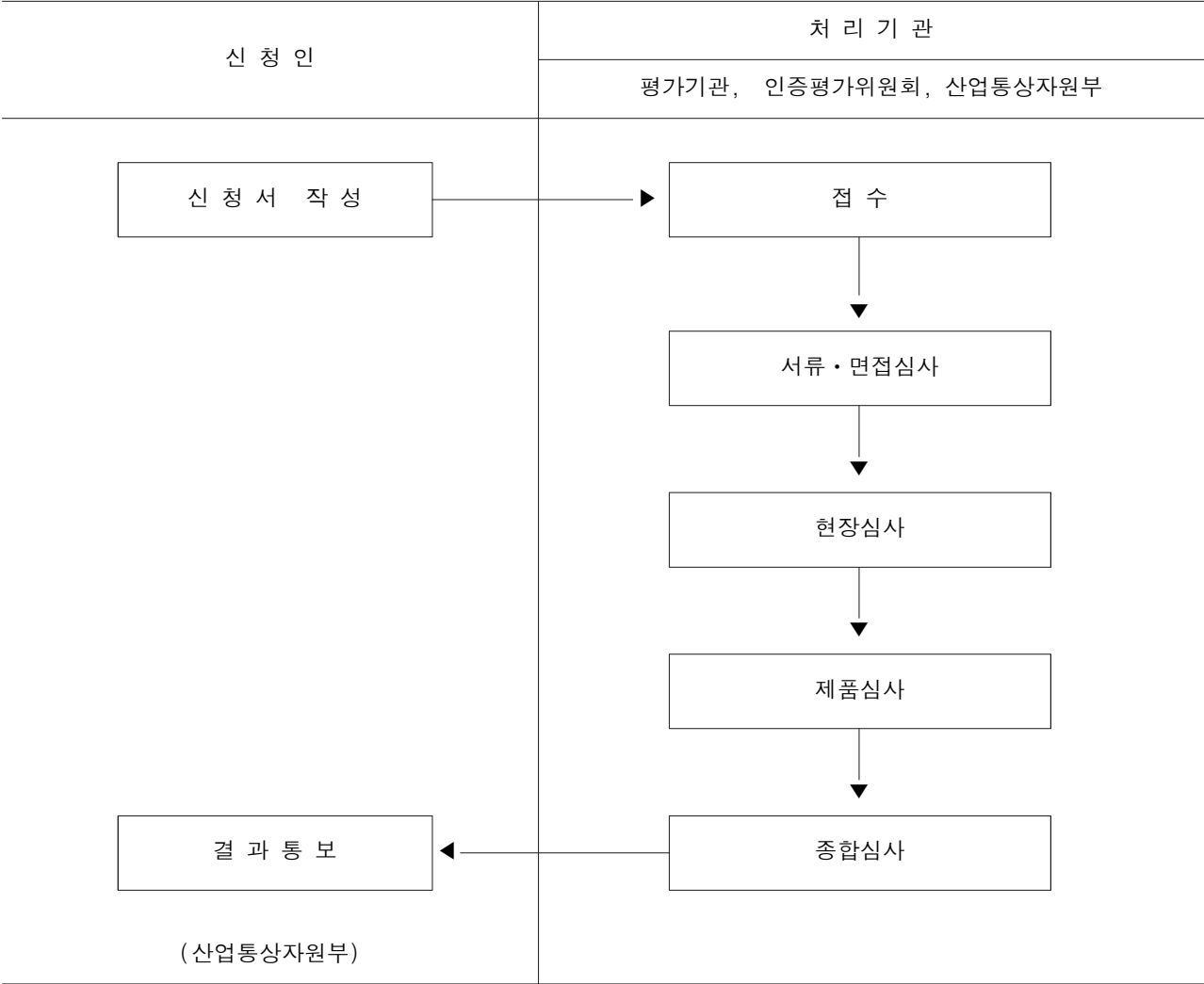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평가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제 품 인 증 서

제 품 명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증 번 호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
제품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신청제품	인증번호		제품명		
	인증유효기간		규격, 용도, 모델명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동종업체		수요처		
	연장사유 * 인증신제품과 관련한 현재의 국내외 경쟁기업·경쟁제품의 현재수준 등 연장사유에 대해 기술				
	신청제품인증서 분실사유 * 신청제품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업무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 귀하

제출서류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국제표 준화기구(ISO)의 인증서로 대체 가능)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서류·면접심사 : 200,000원 현장심사 : 500,00 0원
평가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평가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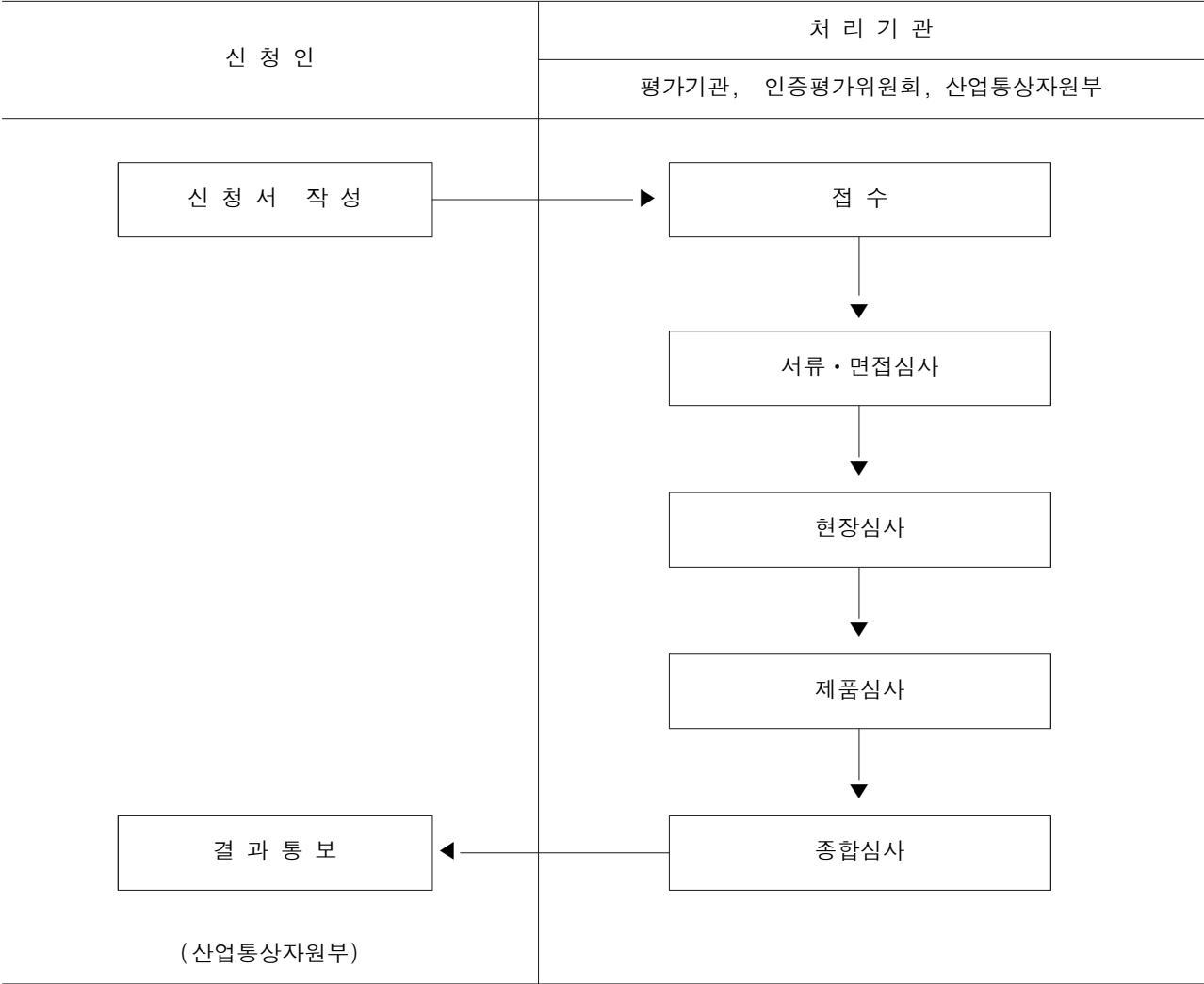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u>설명자료</u> 또는 <u>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u>	2. ----- ----- ----- <u>설명자료</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 ----- ----- ----- ----- ----- ----- -----.

1. · 2. (생 략)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u>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u>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u>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u>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1조(수수료) ① <u>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u>	1. · 2. (현행과 같음) 3. ----- ----- ----- <u>설명자료</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u>설명자료</u>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수료) ① <u>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u>
--	--

② (생 략)	<u>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에는 면제하되,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경우와 신제품 인증 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 불합격한 이후 동일 신청제품에 대해서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